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

의안 번호	240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6. 6. 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가.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

-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
- 기타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나.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

-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
-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

2.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3.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의 5급이상 직원

다. 장애인복지위원 임기

-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라. 수당 등

-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출장하는 때에는 “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”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1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
- 나. 예산조치 : 1차 추경시 확보예정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과 합의
- 라. 입법예고 : 2006. 5. 10~ 5. 30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
2.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**제3조 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
2.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

**제4조 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 (회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·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 (소위원회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소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·조사·심의하고,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간사 및 서기)**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④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.

**제9조 (수당 등)**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**제10조 (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)**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 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